현장실습 참가신청서

학과		게임공학부 엔터테인먼트컴퓨팅전 공		지도교수	김경철(인)
순번	성명	학번	학년	e-mail	연락처
1	강아영	2015184003	3	2015184003@kpu.ac.	<010 -7348-2227

업체명	배우미		대표자명	박병근
업체유형	교육 도우미 게임제작		상시인력	3명
생산 및 취급품목			사업자등록 번호	175-17-00845
	전화/전송	010-3949-6102	_	
연락처	E-Mail	pbg3949@hanmail.net		
근즉시	주소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TIP 303호		
	실무책임자	오세진		

	실습기간
실습기간	2018-12-19 ~ 2019-02-19 (8주)
지도교수 판단	

위와 같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신청인(학생) 강아영 (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현장실습 현약서

제1조(모전)

본 협약서는 실습기관 배우미(이하"갑"이라 한다)과 실습학생 강아영(이하"을"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 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교육(실습학기제)(이 하 "실습"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 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기간 및 장소)

①실습 기간은 (18년 12월 19일) ~ (19년 2월 19일) 로 한다. ②실습은 원칙적으로 "갑"이 관리.지배하는 현장시설을 이용 하여 실시한다

제3조(실습시간 및 휴식)

①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실습 과 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1일 1시 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실습은 운영할 수 없 다. 단, 실습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을"의 서면동의 를 얻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실습에 필요한 시설, 기계, 공구, 실험장비 기타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2.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첨1 의 현장실습 커리큘럼에 따라 성실하게 지도한다.
- 3.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5조("을"의 권리 및 의무)

-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실습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 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3. 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실습기간 중 "갑" 및 "병"의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2. 실습을 위한 시설, 기계, 공구, 실험장비 기타 장 비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 다
- 3. 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학생 보호)

- ①"병"은 "을"에게 실습에 앞서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며, "갑"은 "을"에게 실습에 앞서 또는 실습 중 현장시설 및 실습과제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 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갑"은 "을"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장비 등에 대
- 한 위험방지 조치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병"은 "을"에 대하여 실습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 보험에 가입하며, "갑"은 "을"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 은 경우 보상금 청구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에 협조한다.

제7조("병"의 지도.감독)

- ① "병"은 본 협약서의 이행 여부 확인 및 학생 보호를 위하
- 여 실습 장소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병"은 전항의 조치 전에 "갑"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 고, "갑"은 자신의 사업수행에 방해가 되는 등 합리적인 거 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③"을"은 실습기간 중 "병"에게 현장실습 중간보고를 하
- 고, 현장실습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전항의 현장실습 중간보고회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실습지원비 지급 등)

- ①"갑"은 "을"에게 선물, 식사 등 현물을 제공할 수 있고, 기 숙사, 통근버스, 휴게실, 의무실 등 복리후생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갑"은 "을"의 실습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실습지원비 4주 기준 (0)원을 실습기간 종료 후 14일 이 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전항의 비용을 공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실습 이외의 단순 반 복 작업, 기계 조립 등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나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 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협약의 해지 등)

- ①"갑"과 "을"은 실습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지일 3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고를 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 ②"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 를 "병"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 운영 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2. "을"이 수업계획에 따른 정당한 실습지도에 불응하 는 경우
 - 3. 본 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더라
 - 도 "갑"은 "을"에게 실습일 수에 비례하여 제8조에 의 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제10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 ① "병"은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갑"에게 안내하
- 고, "갑"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 며 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을 근거로 "을"을 평가하거 나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② "병"은 학사규정-2 현장연구 교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 조. 제6조. 제19조 등에 따라 "을"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제11조(실습 내용 변경 등)

실습기간 중 본 협약서와 달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갑, "을", "병" 전원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변경 ·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에게 불 리한 것을 제외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 시), "병"의 학사규정-2.현장연구 교과 운영에 관한 규 11 **웰** "갑"의 **항**업**일**칙을 준용한다.

2018년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실습기관)	을 (실습학생)	병 (학 교)
주 소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 로 237 TIP 303호 (429-793) 기관명:배우미 대표자 : 박병근 (직인)	학과/학번: 게임공학부 엔터 테인먼트컴퓨팅전 공/2015184003 연락처: (010)-7348- 2227 성명: 강아영 (인/서명)	한국산업기술대 전투 기업의 총 장 (직인)

현장실습 현약서

제1조(모전)

본 협약서는 실습기관 배우미(이하"갑"이라 한다)과 실습학생 강아영(이하"을"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 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교육(실습학기제)(이 하 "실습"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 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기간 및 장소)

①실습 기간은 (18년 12월 19일) ~ (19년 2월 19일) 로 한다. ②실습은 원칙적으로 "갑"이 관리.지배하는 현장시설을 이용 하여 실시한다

제3조(실습시간 및 휴식)

①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실습 과 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1일 1시 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실습은 운영할 수 없 다. 단, 실습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을"의 서면동의 를 얻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실습에 필요한 시설, 기계, 공구, 실험장비 기타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2.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첨1 의 현장실습 커리큘럼에 따라 성실하게 지도한다.
- 3.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5조("을"의 권리 및 의무)

-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실습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 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3. 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실습기간 중 "갑" 및 "병"의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2. 실습을 위한 시설, 기계, 공구, 실험장비 기타 장 비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 다
- 3. 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학생 보호)

- ①"병"은 "을"에게 실습에 앞서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며, "갑"은 "을"에게 실습에 앞서 또는 실습 중 현장시설 및 실습과제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 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갑"은 "을"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장비 등에 대
- 한 위험방지 조치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병"은 "을"에 대하여 실습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 보험에 가입하며, "갑"은 "을"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 은 경우 보상금 청구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에 협조한다.

제7조("병"의 지도.감독)

- ① "병"은 본 협약서의 이행 여부 확인 및 학생 보호를 위하
- 여 실습 장소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병"은 전항의 조치 전에 "갑"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 고, "갑"은 자신의 사업수행에 방해가 되는 등 합리적인 거 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③"을"은 실습기간 중 "병"에게 현장실습 중간보고를 하
- 고, 현장실습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전항의 현장실습 중간보고회에 참석
-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실습지원비 지급 등)

- ①"갑"은 "을"에게 선물, 식사 등 현물을 제공할 수 있고, 기 숙사, 통근버스, 휴게실, 의무실 등 복리후생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갑"은 "을"의 실습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실습지원비 4주 기준 (0)원을 실습기간 종료 후 14일 이 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전항의 비용을 공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실습 이외의 단순 반 복 작업, 기계 조립 등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나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 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협약의 해지 등)

- ①"갑"과 "을"은 실습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지일 3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 해지 예고를 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 ②"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 를 "병"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 운영 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2. "을"이 수업계획에 따른 정당한 실습지도에 불응하 는 경우
 - 3. 본 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더라
 - 도 "갑"은 "을"에게 실습일 수에 비례하여 제8조에 의 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제10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 ① "병"은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갑"에게 안내하
- 고, "갑"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 며 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을 근거로 "을"을 평가하거 나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② "병"은 학사규정-2 현장연구 교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 조. 제6조. 제19조 등에 따라 "을"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제11조(실습 내용 변경 등)

실습기간 중 본 협약서와 달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갑, "을", "병" 전원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변경 ·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에게 불 리한 것을 제외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

2018년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실습기관)	을 (실습학생)	병 (학 교)
주 소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 로 237 TIP 303호 (429-793) 기관명:배우미 대표자 : 박병근 (직인)	학과/학번: 게임공학부 엔터 테인먼트컴퓨팅전 공/2015184003 연락처: (010)-7348- 2227 성명: 강아영 (인/서명)	한국산업기술대 전투 기계의 총 장 (직인)

현장실습 현약서

제1조(모전)

본 협약서는 실습기관 배우미(이하"갑"이라 한다)과 실습학생 강아영(이하"을"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 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교육(실습학기제)(이 하 "실습"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 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습기간 및 장소)

①실습 기간은 (18년 12월 19일) ~ (19년 2월 19일) 로 한다. ②실습은 원칙적으로 "갑"이 관리.지배하는 현장시설을 이용 하여 실시한다

제3조(실습시간 및 휴식)

①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실습 과 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1일 1시 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실습은 운영할 수 없 다. 단, 실습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을"의 서면동의 를 얻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실습에 필요한 시설, 기계, 공구, 실험장비 기타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2.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첨1 의 현장실습 커리큘럼에 따라 성실하게 지도한다.
- 3.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5조("을"의 권리 및 의무)

-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실습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 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3. 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현장실습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실습기간 중 "갑" 및 "병"의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2. 실습을 위한 시설, 기계, 공구, 실험장비 기타 장 비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 다
- 3. 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학생 보호)

- ①"병"은 "을"에게 실습에 앞서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며, "갑"은 "을"에게 실습에 앞서 또는 실습 중 현장시설 및 실습과제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
- 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갑"은 "을"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장비 등에 대 한 위험방지 조치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병"은 "을"에 대하여 실습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 보험에 가입하며, "갑"은 "을"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 은 경우 보상금 청구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에 협조한다.

제7조("병"의 지도.감독)

- ① "병"은 본 협약서의 이행 여부 확인 및 학생 보호를 위하
- 여 실습 장소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병"은 전항의 조치 전에 "갑"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 고, "갑"은 자신의 사업수행에 방해가 되는 등 합리적인 거 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③"을"은 실습기간 중 "병"에게 현장실습 중간보고를 하
- 고, 현장실습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전항의 현장실습 중간보고회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실습지원비 지급 등)

- ①"갑"은 "을"에게 선물, 식사 등 현물을 제공할 수 있고, 기 숙사, 통근버스, 휴게실, 의무실 등 복리후생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갑"은 "을"의 실습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실습지원비 4주 기준 (0)원을 실습기간 종료 후 14일 이 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전항의 비용을 공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실습 이외의 단순 반 복 작업, 기계 조립 등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나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 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협약의 해지 등)

- ①"갑"과 "을"은 실습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지일 3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고를 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 ②"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 를 "병"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 운영 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2. "을"이 수업계획에 따른 정당한 실습지도에 불응하 는 경우
 - 3. 본 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더라
 - 도 "갑"은 "을"에게 실습일 수에 비례하여 제8조에 의 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제10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 ① "병"은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갑"에게 안내하
- 고, "갑"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 며 그 결과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을 근거로 "을"을 평가하거 나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② "병"은 학사규정-2 현장연구 교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 조. 제6조. 제19조 등에 따라 "을"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제11조(실습 내용 변경 등)

실습기간 중 본 협약서와 달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갑, "을", "병" 전원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변경 ·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에게 불 리한 것을 제외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 시), "병"의 학사규정-2.현장연구 교과 운영에 관한 규 11 **월** "갑"의 **항**업**일**칙을 준용한다.

2018년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실습기관)	을 (실습학생)	병 (학 교)
주 소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 로 237 TIP 303호 (429-793) 기관명:배우미 대표자 : 박병근 (직인)	학과/학번: 게임공학부 엔터 테인먼트컴퓨팅전 공/2015184003 연락처: (010) - 7348 - 2227 성명: 강아영 (인/서명)	한국산업기술대 전투 기계

현장실습 교육 커리큘럼

주차	제목	주간 실습내용	관련 학과목
1주차		게임 제작에 전반적인 기획(컨셉)과 역할을 나누어 문 서화시킵니다.	
2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1 (캐릭터 제작, 기본 기능 개발)	
3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2 (오브젝트 제작, 이펙 트 제작)	
4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3 (UI 기획, 텍스쳐 제 작, UI 기능 개발)	
5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4 (2d sprite 제작 ,UI 적용)	
6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5 (게임 연동)	
7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7 (버그 및 오류 수정 및 보완)	
8주차		8주간 게임 개발 과정 포트폴리오 문서 작성	

일 시: 2018년 11 월 30 일

실습기업 담당자: 오세진 (인)

실습학생: 강아영 (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장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 교육 커리큘럼

주차	제목	주간 실습내용	관련 학과목
1주차		게임 제작에 전반적인 기획(컨셉)과 역할을 나누어 문 서화시킵니다.	
2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1 (캐릭터 제작, 기본 기능 개발)	
3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2 (오브젝트 제작, 이펙 트 제작)	
4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3 (UI 기획, 텍스쳐 제 작, UI 기능 개발)	
5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4 (2d sprite 제작 ,UI 적용)	
6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5 (게임 연동)	
7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7 (버그 및 오류 수정 및 보완)	
8주차		8주간 게임 개발 과정 포트폴리오 문서 작성	

일 시: 2018년 11 월 30 일

실습기업 담당자: 오세진 (인)

실습학생: 강아영 (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장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 교육 커리큘럼

주차	제목	주간 실습내용	관련 학과목
1주차		게임 제작에 전반적인 기획(컨셉)과 역할을 나누어 문 서화시킵니다.	
2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1 (캐릭터 제작, 기본 기능 개발)	
3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2 (오브젝트 제작, 이펙 트 제작)	
4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3 (UI 기획, 텍스쳐 제 작, UI 기능 개발)	
5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4 (2d sprite 제작 ,UI 적용)	
6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5 (게임 연동)	
7주차		제작된 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 필요한 요 소들을 제작 및 개발합니다07 (버그 및 오류 수정 및 보완)	
8주차		8주간 게임 개발 과정 포트폴리오 문서 작성	

일 시: 2018년 11 월 30 일

실습기업 담당자: 오세진 (인)

실습학생: 강아영 (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장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 확인서

본 기관(기업)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8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2018-12-19 ~ 2019-02-19 기간내)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실습은 재학생들의 현장 적응 능력 강화 및 현장 실무 상황에 적합한 과업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폐사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습생에 게 직장경험을 형성케 하고 폐사로서는 향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성 을 갖는 교육 훈련과정입니다.

본 교육 과정은 현장실습 커리큘럼(장비 매뉴얼, 작업 매뉴얼, 업무 매뉴얼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습 교육담당자를 지정,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자는 실습 내용에 대한 소개, 교육, 주간일지 작성 검토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폐사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실습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기준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수준 등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 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폐사는 해당 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장 적응 능력 강 화 향상을 위하여 현장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실습기관명: 배우미 (직인)

본인(학생)은 위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항에 동의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실습학생명: 강아영 (서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귀하